

뉴질랜드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뉴질랜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1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사유지 원시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허가서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ermit or plan)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2017.6월 기준 인공림 126만ha, 원시림 1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2017.12월 기준 40만ha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3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동의서 및 변경/취소 결정서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림: 목재생산세 납부확인서 (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판과 같은 혼합목재 제품의 경우 공정표 및 수입재에 대한 추가 목재 합법성 증명서 필요 * [발급기관: FGLT(Forest Growers Levy Trust)] - 천연림: 수출허가서(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Indigenous Timber 1(ITE1),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Swamp Kauri(IT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첨부1~3

[첨부1. 목재생산세 납부확인서(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 수출업체의 확인서가 아닌 경우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Attachment 1: Revised template for the New Zealand 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effective 18 November 2025.

** Training Database **



□ = Test system data

SUPPLIER COMPANY		STATEMENT PRINTED:	22 Sep 2025
TESTING 1			
Postal address 1			
City 1010			
SUPPLIER CODE:	TES00001		
REFERENCE:	0000000078		

NEW ZEALAND HARVESTED WOOD LEVY STATEMENT

To whom it may concern,

A levy is imposed on all wood material harvested from plantation forests in New Zealand under the Commodity Levies (Harvested Wood Material) Order 2025. All the harvested wood material supplied by TESTING 1 is subject to that levy.

↑
change

STATEMENT VALID FOR: 01/09/2025 - 31/08/2026

AUTHORISATION

This statement is issued by Levy Systems Limited at the request of the above named entity. Levy Systems Limited are contracted to administer the levy for the Forest Growers Levy Trust.

This is a true representation of information in the Harvested Wood Commodity Levy System.

Andrew Taylor
Chief Executive Officer
Levy Systems Ltd
Email: operations@levysystems.co.nz
Website: http://www.levysystems.co.nz/



[첨부2. 수출허가서(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Indigenous Timber 1(ITE1))]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Indigenous Timber (Form ITE1)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anatū Ahu Matua



This form to be forwarded to AsureQuality New Zealand at least 10 days prior to the date of exporting.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 Form ITE1 (s 67C(3) Forests Act 1949; s 5(2) Forests Amendment Act 2004)

To: Director-General,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I GIVE NOTICE of my intention to export the indigenous forest produce described in this notice, and, I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set out in this notice were, at the date of this declaration, true and correct in every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rests Act 1949.

I ACKNOWLEDGE an inspection of the export consignment by a Forestry Officer is required.

Signature of Exporter: _____ (Print Name): _____ Date: _____

Exporter/Consignor Name and Address			
Phone:	Fax:	Email:	
Buyer/Consignee Name and Address			
Ship/Airline/Post (Name of vessel/Flight No.)	Sea/airport of loading		
Sea/airport of discharge	Final Destination	Date of exporting:	

Description of Exports (include any marking)	Species	Net weight (kg)	Volume (m ³)
Source: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Notes:		
Note: All applications MUST include a written statement of the source of the timber (for example, SPM Plan/Permit/Annual Logging Plan Number or Milling Statement and owner(s) name.)			
Address where consignment can be inspected:			
Contact Name:	Contact Number:		
Phytosanitary certificates requir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Source confirm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AsureQuality Use Only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spect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Y / <input type="checkbox"/> N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EXPORT: APPROVED / NOT APPROVED
Signed: _____ Da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Signed: _____ Date: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Forestry Officer Name:	Forestry Officer Name:		
Customs clearance #: (Provide this to your Customs Broker)	Application #:		



Notes: Exporters are advised to check with <http://www.mpi.govt.nz/law-and-policy/requirements/importing-countries/phytosanitary-requirements/forestry-hoops/> for any phytosanitary requirements.

Export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 back of this form.

Email phytoexports@asurequality.com or fax 07-575-8110 your completed form to AsureQuality-Mt Maunganui.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the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0800 60 83 33

[첨부3. 수출허가서(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Swamp Kauri(ITE2))]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Swamp Kauri (Form ITE2)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enzit Aka Mātauranga



This form to be forwarded to AsureQuality New Zealand at least 10 days prior to the date of exporting.

Notice of Intention to Export – Form ITE2
(s 67(3) Forest Act 1949; s 5(2) Forest Amendment Act 2004)

To: Director-General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Exporter/Consignee:

Phone: _____ Fax: _____

Email: _____

Container/Bill of Lading No. _____

Ship/Airline
(Name of vessel/Flight No.) _____

Date of exporting _____

Seal/airport of discharge _____

I GIVE NOTICE of my intention to export the swamp kauri produce described in this notice, and, I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set out in this notice were, at the date of this declaration, true and correct in every respect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rests Act 1949.

I ACKNOWLEDGE an inspection of the export consignment by a Forestry Officer is required.

Signature of Exporter:

(Print Name): _____

Final Destination _____

Date: _____

Volume (m³)

Description of Exports (Include any marking)

Whole stump or root: _____

Sawn stump or root timber: _____

Finished or manufactured product: _____

Note: Include an itemised packing list for each consignment when submitting this form.

Source: _____

Note: All applications must include a written statement of the source of the timber. For example, a Milling Statement number or landowner name and location.

Address where consignment can be inspected: _____

Contact Name: _____

Contact Number: _____

Phytosanitary certificates required? Y / N

**Send this form with
attachments to:**

AsureQuality-Mt Maunganui
Email [phycerts@asurequality.com](mailto:phytocerts@asurequality.com)
or fax 07-575-8110

MPI Use Only		AsureQuality/MPI Use Only	
Forestry Officer Name:	Date:	Signed:	Date:
Signed:		Forestry Officer Name:	
Source confirmed: Y / N / NA		EXPORT: APPROVED / NOT APPROVED	
Expiry Date:		Application No.:	
Customs clearance number: (Provide this to your Customs broker)			

Note: Exporters are advised to check with www.mpi.govt.nz/awr-and-policy/requirements/importing-countries/phytosanitary-requirements/forestry-icpru/ for any Phytosanitary requirements. Export Information is provided on the back of this form. Email [phycerts@surequality.com](mailto:phycerts@asurequality.com) or fax 07-575-8110 your completed form to AsureQuality-Mt Maunganui.

뉴질랜드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뉴질랜드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천연림 등)됩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뉴질랜드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생산림 등)로 구분됩니까?
- 뉴질랜드의 산림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제한제도의 업무 담당부서는 어디이며, 연락처는 무엇입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뉴질랜드산 목재제품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산이 아닌 목재제품에 관한 정보는 공급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산림 분류

뉴질랜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산림 등급이 있습니다: 주로 생산을 위해 조성된 인공림과 원시림.

뉴질랜드 원시림에서 한국으로의 목재제품 수출은 미미한 수준입니다(2010년 이래로 한 건의 수송이 정부에 통보되었습니다).

1. 인공림

2. 소유권 및 관리.

뉴질랜드 인공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	인공림 면적(백만 ha)	%
사기업 및 등록된 공기업	1.639	96%
지방정부 및 주소유 기업	0.052	3%
중앙 정부	0.014	1%
	1.705	

출처: 2016년 4월 1일자 국가 외래종 산림 설명(National Exotic Forest Description),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뉴질랜드에는 인공림에 관한 다양한 산림 소유권, 산림경영 및 토지 소유권 약정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가장 일반적인 외래 재배종은 라디에타 소나무(87%), 더글라스퍼(6%)와 유칼립투스 종(1%)입니다. 소량의 기타 외래종 침엽수와 활엽수종도 수출될 수 있습니다.

인공림은 산림 소유주 또는 산림 관리자가 관리합니다. 인공림의 최대 산림 소유주 및 관리자에 관한 정보는 <https://www.nzfoa.org.nz/resources/publications/facts-and-figur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공림은 운영 및 상업적 이유 때문에 주로 지속가능한 수확량 기반으로 관리됩니다. 벌채 및 조림은 이러한 산림의 소유주 및 관리자의 사업상 결정입니다.

보호림 및 경제림

외래종 보호림 및 경제림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인공림
보호림	소규모 민간 보호구역/전국적 통계 없음.
경제림	거의 100%

인공림의 적합성 보장

뉴질랜드의 모든 법률 및 운영 환경에서는 불법벌채 목재제품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인공림은 벌채 목적으로만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고, 산림 소유주의 사유 재산권을 보호 및 시행하는 강력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법 목재가 생산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질랜드 인공림에서 벌채된 목재제품에 대한 정부의 목재 합법성 보장 시스템이 없습니다.

불법 목재제품의 위험

뉴질랜드산 목재제품이 불법일 위험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림은 벌채 목적으로만 조성됩니다.
- 인공림은 주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벌채 및 조림은 산림 소유주가 상업적으로 결정합니다.
- 강력한 법과 집행의 규칙
- 원만한 산업-정부 관계 및 산업의 자발적인 시행규범
- 강력하고 활발한 NGO 및 지역사회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입니다. 2010년 이래로 뉴질랜드는 국제 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최소 4위를 기록했으며, 16년 중 10년은 1위와 같거나 1위였습니다.

추가 정보

뉴질랜드의 법률 및 운영 환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뉴질랜드산 목재제품이 불법 일 위험이 미미한 이유는 다음 출판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뉴질랜드 산림제품의 합법성(*The Legality of New Zealand's Forest Products*) (1차 산업부, 2013)
- 뉴질랜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Sustainable Management of New Zealand's Forests*) (1차산업부 2015)

2. 원시림

소유권 및 관리

뉴질랜드 원시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시림	
소유권	면적(백만 ha)	%	
중앙 정부(보존부)	5.2	76%	
민간, 지방정부, 기타 부서 및 기타 지역	1.65	24%	
	6.85		

출처: 뉴질랜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2차산업부(2015)

중앙정부 산림은 보존부(Department of Conservation)가 관리합니다. 관리업무는 종과 서식지의 보호 및 복원과 공공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보호림 및 경제림

자생 보호림 및 경제림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추산됩니다.

		원시림
현황	면적(백만 ha)	
보호림(보존부 및 민간 계약)	5.4	
사유지에서 경제림 허가됨.	0.084	

출처: 뉴질랜드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1차산업부(2015)

사유지에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벌채를 위해 승인한 원시림 면적은 총 원시림 면적의 약 1%입니다.

보편적인 원시림 수종은 리무(rimu), 나한송(matai), 미로(miro), 카우리소나무(kauri)와 남반구 너도밤나무 등입니다.

원시림의 목재 적합성 보장

1949년 산림법(Forests Act 1949)이 원시림의 지속가능한 벌채를 규제하고 원시림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관리합니다. 1차산업부가 산림법을 집행합니다.

1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PO BOX 2526

Wellington 6140

New Zealand

Phone: +64 4 894 0100

Website: www.mpi.govt.nz/growing-and-producing/forestry/indigenous-forestry/

벌채 허가 관련 사항

- 뉴질랜드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 벌채 금지 지역 및 보호 수종 포함
- 뉴질랜드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 주십시오.

벌채를 규제하는 법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산림 소유주는 산림을 벌채하고 토공과 같은 관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허용된 활동이라고 칭하며,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용된 활동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산림 소유주는 현지 정부/위원회에 자원 동의서(허가서와 유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 동의서는 벌채 또는 토공작업에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991년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은 침식되기 쉬운 토지 및 수역에서의 벌채 영향을 포함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요건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fE)에서 집행하지만, 주로 현지 정부기관에 의해서 시행됩니다(지역 및 구/시 위원회).

또한, 2018년 5월부터는 인공림 임업활동에 대한 요건(허용된 활동 및 자원동의서 요건)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표준이 되기 때문에, 산림 소유주가 더욱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 표준은 위험을 기반으로 합니다(예, 토지유형에 대한 침식위험).

자원 동의서의 예는 뉴질랜드 산림제품의 합법성(1차산업부, 201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시림의 벌채도 사유 원시림의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벌채를 요구하는 1945년 산림법에 의거하여 규제됩니다. 판매 또는 교역을 위한 사유지 원시림의 벌채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허가서나 계획(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Permit or Plan), 또는 가공내역서(Milling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원시림 목재제품의 합법성 확인은 1차산업부에 이메일
[\(indigenous.forestry@mpi.govt.nz\)](mailto:indigenous.forestry@mpi.govt.nz)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사항

- 뉴질랜드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제도(FM 또는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인증기관은 어디입니까?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증

뉴질랜드에서 제 3자 산림관리인증 및 관리망 제도(chain of custody system)는 자발적으로 실시됩니다. 뉴질랜드에는 현재 두 개의 제 3자 산림관리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산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모든 대규모 산림 소유주를 포함한 21 명의 산림 소유주가 FSC 산림관리 및 관리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FSC 인증을 받은 총 인공림 면적은 126만 헥타르로 인공림 면적의 약 70%였습니다.

2017년 6월, FSC 인증을 받은 원시림은 11,900 헥타르였습니다.

약 256 곳의 목재제품 공급업체,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가 FSC 관리망 인증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의 FSC 인증기관은 FSC NZ 웹사이트 (<https://nz.fsc.org/en-nz/get-involved-01/become-certified-01/fsc-accredited-certification-bodies-0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뉴질랜드 표준(NZS AS 4708:2014)은 2016년 12월에 PEFC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 개의 회사가 뉴질랜드 조림지의 약 20%에 해당하는 400,000 헥타르 이상의 산림에 PEFC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말에는 두 개의 회사가 추가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7개의 회사가 PEFC 관리망 인증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다수의 현장에 적용됩니다. PEFC 인증 산림에서 공급된 목재의 가용성으로 인해 PEFC 관리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는 <https://www.pefc.org/find-certified/certified-certificat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산업규범 및 협약

뉴질랜드 산림산업은 모범사례 가이드와 같은 자체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공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합법성을 추진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산림부문은 지속가능하고 합법적인 임업생산 보장을 지원하는 환경단체들과 많은 국가 환경임업 이니셔티브를 협상했습니다. 대규모 인공림 소유주들은 이러한 표준, 시행규범, 산림관리원칙 및 자체적인 토지 및 산림운영 관리에 대한 합의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임업회사들도 환경관리 및 직원안전을 위한 자체 환경관리시스템과 시행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에 서명된 뉴질랜드 상업 조림지 관리원칙(Principles for Commercial Plantation Forest Management in New Zealand)은 산림 소유주협회(Forest Owners' Association) 회원들이 법이나 국제 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것 이상의 환경관행 및 사회적 행동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뉴질랜드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뉴질랜드의 미미한 불법벌채 위험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 및 기관들에게도 인정되었습니다.

1. 불법벌채 정책 개발을 알리기 위해 호주 농림수산부(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가 실시한 연구. 이 보고서는 <http://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reports-supporting-the-illegal-logging-law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국제산림관리협회의 관리된 목재(Controlled Wood) 위험관리는 불법벌채 목재를 포함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뉴질랜드의 위험이 낮다(Low)고 평가합니다. (<https://nz.fsc.org/en-nz/policies/controlled-wood-risk-assessment>)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뉴질랜드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 뉴질랜드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뉴질랜드 산림의 불법벌채 목재제품의 위험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목재 합법성 보증시스템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산 목재제품이 불법일 위험이 거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림은 별채 목적으로만 조성됩니다.
- 인공림은 주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며, 별채 및 재식림은 산림 소유주의 상업적 결정입니다.
- 강력한 법과 집행의 규칙
- 원만한 산업-정부 관계 및 산업의 자발적인 시행규범
- 강력하고 활발한 NGO 및 지역사회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국가입니다. 2010년 이래로 뉴질랜드는 국제 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에서 최소 4위를 기록했으며, 16년 중 10년은 1위와 같거나 1위였습니다.

기타

- 뉴질랜드 내에서 합법적으로 별채된 원목과 합법적으로 수입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가공 및 수출을 위한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 허가 혹은 규제하는 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 합법적인 가공 및 수출 증명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Flitches, 집성재, 적층마루판, 합판, 가구 등 수입된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를 혼합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원자재와 국내 원자재의 함량 및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뉴질랜드의 수출입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 공급망 이력 추적, 합법 성 식별 등 불법별채목재 교역제한제도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민간 또는 비정부단체가 있습니까?

뉴질랜드의 법률은 활엽수와 침엽수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공림의 목재제품

1. 가공

인공림의 산림제품을 운송, 가공 또는 교역하기 위한 권한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뉴질랜드 목재가공회사가 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았습니다.

2. 수출

인공림에서 수출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특성 또는 양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수출관련 추가 부담금, 세금 또는 관세가 없으며, 임업 수출업체가 특별히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시림의 목재제품

1. 가공

1949년 산림법에 따라, 등록된 제재소에서만 원시림 목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가공된 목재는 산림법에 따라 MPI가 승인한 공급지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1차산업부가

승인된 제재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2. 수출

원시림 목재제품의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수출은 뉴질랜드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액의 0.003%로 추산됩니다.

1949년 산림법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원시림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을 허용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산림제품의 합법성(*The Legality of New Zealand's Forest Products*) (1차산업부, 201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원시림 목재제품의 합법성 확인은 1차산업부에 이메일 (indigenous.forestry@mpi.govt.nz)로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벌채 및 교역에 관한 정책

세계적 관점에서, 뉴질랜드의 수입 목재제품 시장은 소규모입니다. 오히려, 뉴질랜드는 목재제품의 대규모 순수출국으로, 수입액의 3배 이상을 수출합니다. 주요 수출품은 현지에서 재배된 인공림 활엽수에서 생산된 원목, 목재, 판넬, 합판과 펄프 및 종이입니다.

2009년, 뉴질랜드 정부는 일련의 국내, 양자 및 다자적 조치로 구성된 불법벌채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질랜드 수입목재 교역단체(New Zealand Imported Timber Trade Group) (아래 설명) 등 자발적인 산업 이니셔티브 장려
- 국제적 참여 및 협력
- 정부의 목재제품 조달정책

뉴질랜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국제열대목재기구(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불법벌채 및 관련 교역에 관한 APEC 전문가그룹(APEC Expert Group on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산림에 관한 UN 포럼(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등 국제적 장 및 협력을 통해 불법벌채 및 교역을 퇴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비정부단체(NGO)

뉴질랜드 수입목재 교역단체는 주요 열대목재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로 이루어진 자발적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표에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열대목재가 지속 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에서 공급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벌채 목재가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위험이 감소합니다.

불임

- 상호간의 이해를 돋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와 상기 질문에 해당되는 문서의 샘플(별채허가서, 수출허가서, 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